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가단1102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B

변론 종결2022. 12. 9.

판결 선고2023. 1.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1.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291,6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91,68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대출금채권 가) D 주식회사는 2017. 9. 8. C에게 2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9. 11. 18.,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7.9%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2019. 12. 16.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20. 1. 13. C을 상대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52628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26. 'C은 원고에게 1,915,786원 및 그 중 1,369,277원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2022. 1. 7. 기준 이 사건 제1 양수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는 아래표 기재와 같다.

무담보대출	1,369,277원	473,581원	690,563원	2,533,421원
-------	------------	----------	----------	------------

2) 신용카드 대금채권 가) C은 2014. 5. 9. E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이 E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자, E 주식회사는 2018. 9. 18. F 주식회사에 C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8. 9. 21.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9.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9. 3. 6.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1가소22234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8. 18. 'C은 원고에게 739,936원 및 그 중 673,796원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2021. 5. 22.까지는 연 3%,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2022. 1. 7. 기준 이 사건 제2 양수금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액수는 아래표 기재와 같다.

신용카드	673,796원	25,214원	59,255원	758,265원
------	----------	---------	---------	----------

나. 피고 및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8.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망인은 2019. 12.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 및 H, C, I은 2020. 1.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이 사건 분할협의를 있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6. 채권최고액 2억 6,160만원(2018. 4. 19. 253,176,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채무자 망인으로 한 J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6. 6. 22. 채권최고액 2,520만원(2018. 4. 19. 16,38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채무자 G로 한 J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2019. 4. 16. 채권최고액 4,680만원, 채무자 피고로 한 주식회사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6. 및 2016. 6. 22. 각 마쳐진 J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 4. 17. 말소되었고, 주식회사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0. 2. 11. 말소되었다.
- 6) 피고는 2020. 4. 17.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8.자 매매(매매대금 3억 1,800만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재산상태 등

- 1)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4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 2) C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신용카드 대금채무 외에도 금융기관 등1)에 대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울산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20. 1. 15.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 2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4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는, 망인이 J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C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H가 2013년, 2014년경 C의 3,4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C의 상속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19.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680만 원, 채무자 피고로 한 주식회사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액을 생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한다면 피고의 주장만으로 망인이 C에게 지급한 2,100만 원을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처럼 H가 2013년, 2014년경 C의 3,4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위 3,400만 원이 C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고려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할협의 후 J조합 및 주식회사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책임재산의 부분인 구체적 상속분 상당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의 법정상속분은 1/4이 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 1. 1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억 1,800만 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또한 위 금액과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그리고 이 법원의 J조합 및 주식회사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J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14,153,702원(=6,479,368원+205,310,000원+2,364,334원)이고, 주식회사 K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4,449,2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C의 구체적 상속분은 17,349,261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318,000,000원 - 각 피담보채무액 합계액 248,602,953원(=214,153,702원+34,449,251원)}×1/4, 원 미만 버림]이고, 이 사건 제1, 2 양수금채권의 2022. 1. 7. 기준 원리금은 합계 3,291,686원(=2,533,421원+758,265원)이므로, 결국 원고는 둘 중 적은 금액인 3,291,686원을 한도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3,291,6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291,6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장헌자

별지

1) N대부 4,5000,000원, 대부 7,992,000원, P대부 916,000원, Q대부 1,894,000원, R대부 130,000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17,000원, 서민금융진흥원 8,437,000원